

2024. 2. 2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민선희	02-2133-5480
시장시설지원팀장	김세환	02-2133-5551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8쪽

##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위험으로부터 사전사후 재난안전망 강화

- 화재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 보험가입 통해 불가피한 화재 발생시 나와 이웃의 재산 보호,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 노후 전선 정비부터 화재발생시 소방서로 자동통보되는 알림시설 설치까지 지원

-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앞장선다.
- 이외에도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사후 복구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 및 환급이 가능하다.

〈2024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갱신 포함)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주계약, 66,000원 이상), 타인 배상책임(특약, 6,200원) 의무가입
-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지원금액: 공제료 납입금액의 80% 지원(연 최대 163,360원)
  - 실제 납입(주계약 및 특약 포함)한 공제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가입기간 1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도 1년 163,360원 내에서만 지원

- 지원대상은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며 보장금액별 상품에 따라 57,760원~16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가입금액별 보험료 및 연간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2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A급	B급	A급	B급	A급	B급	A급	B급
보험료	72,200	107,700	138,200	209,200	171,200	253,700	204,200	310,700
서울시 지원액	28,880	43,080	55,280	81,680	68,480	81,680	81,680	81,680
자치구 지원액	28,880	43,080	55,280	81,680	68,480	81,680	81,680	81,680
실제 부담금액	14,440	21,540	27,640	45,840	34,240	90,340	40,820	147,340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 (<http://fma.semas.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노후배선 및 분전반,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금 10%를 포함하여 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하여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아울러 만일 태풍,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복구 및 정비를 지원한다.

-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다양한 사전·사후 지원책을 통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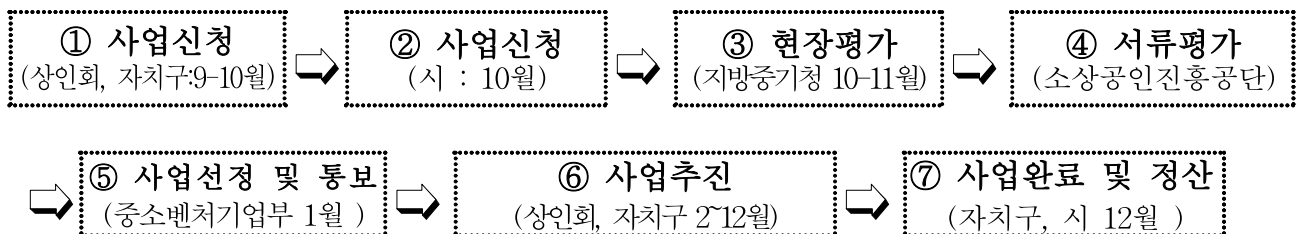
붙임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등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정비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 등
  - 노후배선 및 분전반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신청자격 :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24년 적용)**
  -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시장 등은 우대
  - ※ 매년 사업추진시 중기부, 소진공, 민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준 설정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지방비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시·구비 차등 부담
- '24년 예산 : 1,814백만원(국비 1,237백만원, 시비 577백만원)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중기부 공모 / 자치구 수행
- 지원절차 : 전통시장 → 자치구 → 시 → 지방중기청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소진공 '21.1.)
- 사업내용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 자동 통보 시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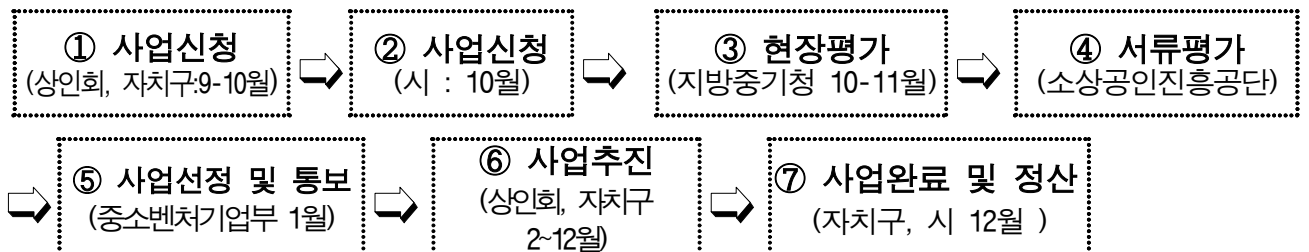
개별점포형 (골목형)	개별 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오픈점포형 (건물형)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 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 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
- 지원조건 : 개별점포당 최대 80만원(국비 56만원 / 지방비 24만원 이내)
- 신청자격 :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24년 적용)
  - 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등은 우대
  - ※ 매년 사업추진시 중기부, 소진공, 민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준 설정
- 매칭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
- '24년 예산 : 396백만원(국비 320백만원, 시비 176백만원)

□ 추진내용

- 추진방법 : 중기부 공모 / 자치구 수행
- 지원절차 : 전통시장 → 자치구 → 시 → 지방중기청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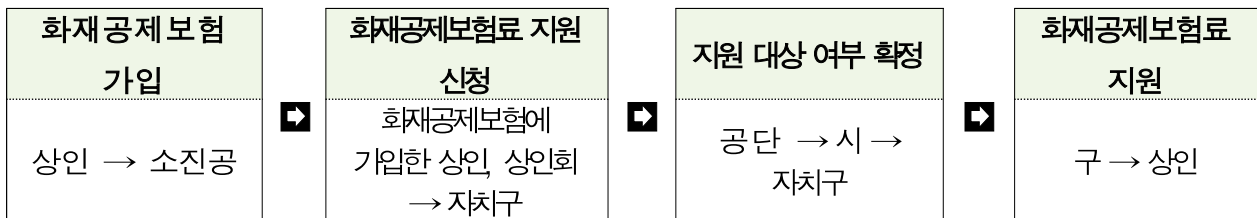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전통시장의 경우 열악한 환경으로 작은 불이라도 순식간에 막대한 재산 피해로 연결
- 추진근거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23.11.1.~'24.10.31.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갱신 포함)
  - ※ 2024.11.1. 이후 가입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주계약, 66,000원 이상), 타인 배상책임(특약, 6200원) 의무가입
- 지원내용 : 공제료 납입금액의 80% 지원(연 최대 163,360원)
- '24년 예산 : 480백만원(전액 시비)
- 가입금액(예시)

구 분		2백만원 (건물/동산 각 1백만원)	1천만원 (건물/동산 각 5백만원)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5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 5백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재물 손해	A급	12,800	39,200	72,200	138,200	171,200	204,200
	B급	16,300	56,900	107,700	209,200	253,700	310,700
화재배상책임		- 상기 금액은 화재배상책임 6,200(A급, B급 동일) - (대인) 1인당 사망 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 \* A급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 지붕
- \* B급 건물 : A급 이외 건축물

○ 추진절차



○ 가입신청

- 오프라인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송부
- 온라인 :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 (fma.semas.or.kr) 신청

## □ 사업개요

### ○ 지원요건

-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후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태풍,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
- 중소기업부 등 공모사업 참여가 어려운 곳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
  - ▶ 단,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가능한 곳을 뜻함)
  - ▶ 안전관련 지원사업 :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시장환경개선, 시설현대화 등

※ 긴급조치 : 자치구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곳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무등록 시장 지원 가능(단, 상인회 조직되어 있을 것)

○ 신청주체 : 자치구(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

### ○ 지원내용

-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및 교체 (자본적경비 지원에 한함)

○ '24년 예산 : 570백만원(전액 시비)